

의안번호	2212028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5B437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목재의 날을 정하여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억원(연평균 1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목재의 날 (안 제4조의2)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2 (목재의 날) 신설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16조(목재문화산업진흥회)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함(제1항)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2항)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의2 (목재의 날)	○	산림청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16조 (목재문화산업진흥회)	×	·제3호 - 개정안은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에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임 - 법 제16조제4항 ¹⁾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회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진흥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향후 진흥회가 수행할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목재의 날 기념식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목재산업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산림청

1)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예산 1억 4,600만원 중 3,200만원이 기념식 개최에 소요됨

[표 2] 목재산업박람회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4	2025	2026(안)
목재이용증진 (1535-304)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146	146	146

자료: 산림청

- 개정안에 따라 목재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5월 23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행사장소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산림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목재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림청의 유사 기념일(임업인의 날) 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
 - 산림청에 따르면 2024~2025년 임업인의 날 행사비용은 각 1억원으로, 목재의 날 행사 규모를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때, 기념행사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임업인의 날 행사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4	2025	2026(안)
청정임산물이용증진 (1535-300)	소비촉진 및 정보관리 (임업인의 날 행사지원)	100	100	100

자료: 산림청

- 추계결과,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억원(연평균 1억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목재의 날 (안 제4조의2)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주: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목재문화진흥회 일반현황

(자료: 산림청)

□ 목재문화진흥회 현황

기관 개요	설립일	2014.03.25	설립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설립목적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진흥, 목재교육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주요기능	국민의 목재 호감도 향상, 생활 속 목재 체험 인프라 구축, 목재문화 정보화 사이트 운영, 탄소저장량 측정, 목재문화인지도 지표의 향상, 목재 생활권의 조성 등		
	조직	1국, 4실	예산('25년도)	71억원 (산림청 위탁, 녹색자금 등)
	인원	현원 16명	임원현황	기관장1, 감사1, 상임이사1, 비상임이사9
	위치	서울시 금천구		
	회원사	해당 없음		
기관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 이사회 → 정기총회 → 산림청 승인		
	보수	명예직(무보수)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기관 목표	○ 목재문화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목재이용 활성화 ○ 목재문화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주요 사업	• 목재문화지수 측정 • 목재교육제도 운영 •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지원사업 •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 •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 숲체험교육사업 • 목재체험교실 운영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예산

구 분	2023	2024	2025	비고
운영비	1,064 (국고보조금: 485)	1,185	1,217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비	5,705	6,343	5,870	
기타	17	104	44	고유목적사업 등
합계	6,787 (국고보조금: 485)	7,632	7,131	

주: 산림청은 목재문화진흥회에 대하여 2023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지원을 하고 있
지 않음